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45
----------	------

2022. 6. 21.(화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제400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선미 경제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」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지역경제협의회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
- 지역경제협의회 구성 등의 사항을 명시함(안 제3조~제5조)
- 회의의 개최, 의안의 제출과 배부, 의견 청취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10조)
- 지역경제협의회 상정 의안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명시함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제출배경

- 지역경제협의회는 기존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운영되던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7개 분과위원회 중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음
-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“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(심의위원회 등)은 명칭, 기능 등 지자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례에 따른 자문기관과 통합 운영할 수 없음”으로 해석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문기관인 지역경제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」을 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검토내용

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

-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, 대통령령인 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(이하 “협의회 규정”이라 함) 제9조제1항에서는 ‘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2항에서는 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음

제9조(지역경제협회의의 설치) ①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·조정을 위하여 각 시·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또한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‘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’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’고 규정하고 있는바
-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」의 제정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

○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조 례 명	제정일자
부 산 광 역 시	부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	1992.01
대 구 광 역 시	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2
인 천 광 역 시	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1991.10
광 주 광 역 시	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0
대 전 광 역 시	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0
울 산 광 역 시	울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7.07
세종특별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2013.01
경 기 도	경기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0.07
강 원 도	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2
충 청 남 도	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	1991.11
전 라 북 도	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	1992.05
전 라 남 도	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3.01
경 상 북 도	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	1992.06
경 상 남 도	경상남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	1991.11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○ 안 제2조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

- 지역경제협의회는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·조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본 조에 명시된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시·도경제협의회의 심의내용과의 연결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

○ 안 제3조는 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- 「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방법은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,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

○ 안 제6조는 지역경제협의회의 회의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- 지역경제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이는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여짐

○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안의 배부 및 제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

-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의회의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안 제9조는 협의회 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

- 하여 의견을 듣는 것으로 심의기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임

- 안 제10조는 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,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도지사가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협의회와 재공유하여 협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되도록 함
- 안 제12조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,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협의회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기존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통합 운영되었던 기능 중 하나인 지역경제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」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경제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
-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시·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서 충청북도 지역경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2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·군 간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
4. 시·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
5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도의 경제 관련 실·국장
2. 시·군의 부시장, 부군수

3. 경제 관련 기관,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

4.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
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
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
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
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
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
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
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협의회
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의안의 제출)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
도 및 시·군과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
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안의 배부) 협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
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2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시·도경제협의회규정

제9조(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) ① 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·조정을 위하여 각 시·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「시도경제협의회규정」 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운영
 - 협의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

3. 관련조문

- 안 제3조(구성)

4. 추계결과

- 산출과정
 - 협의회 참석위원 연간 수당 : 130,000원*×14명**×연1회 = 1,820천원
 - * 출석수당 : 기본수당(2시간 이내) 100천원, 초과수당(2시간 초과) 30천원
 - ** 위원 30명 중 16명 제외(경제부지사, 경제관련 실·국장, 도내 부시장·부군수 제외)
- 산출과정 : 연간 1,820천원,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9,100천원 소요
-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천원)

구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참석위원 수당	9,100	1,820	1,820	1,820	1,820	1,820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정 선 미(220-3210)